

제32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

행정복지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23.(목)



행정복지위원회
전문위원 고종선

- 목 차 -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.....	1
2.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	4
3.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.....	6
4.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	8
5.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1
6.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	13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713호
- 제출일: 2025년 10월 10일
- 제출자: 김보경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2. 제안사유

-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
-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행정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1조)

4. 관계법령

-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
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면 시행된 이후,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았으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춘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중구, 서구, 수성구, 북구, 동구 등이 이미 「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지역 내 생활안전, 교통, 여성·청소년 보호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기 조례 대부분 구·군이 경찰서와 교육청·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및 행정·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,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 또한 달성군의 지역적 특성과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특히 △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5조), △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, △실무협의회 구성(안 제8조) 등을 규정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

- 아울러, 행정지원 및 예산 지원(안 제9조), 수당 지급 근거(안 제10조) 등을 통해 향후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타당하며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와의 체계적 정합성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- 상정안에 대해 총무과에서는 자치경찰의 업무가 여러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 추진체계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부하였습니다.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자치경찰의 사무의 범위는 상위 법령상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내로 판단되며 이는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문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 향후 관련 업무를 추진 시 상위법령 및 본 조례를 근거하여 협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.

-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전 및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실상의 도로 지정에 관한 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729호
- 제출일: 2025년 10월 14일
- 제출자: 신동윤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2. 제안사유

- 「건축법」 제45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관계법령

- 「건축법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건축법」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,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통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.
- 제3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, 제4조에서는 도로관리대장 작성 의무를,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.
- 종합적인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「건축법」 위임사항에 근거하여 사실상의 도로 지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714호
- 제출일: 2025년 10월 10일
- 제출자: 서도원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2. 제안사유

-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4. 관계법령

-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.
- 영구임대주택이란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으로,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.
- 현재 달성군 관내에 “영구임대주택”에 해당하는 곳은 1,400여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옥포 천년나무2단지 내 영구임대아파트 180세대입니다.
- 관내 대구광역시 북구, 동구, 달서구, 수성구 등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,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완화 및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공동전기요금 중 지원할 항목을 명시하고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무분별한 지급 및 예산 증액을 방지하였습니다.
- 따라서, 주거취약계층의 관리비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715호
- 제 출 일: 2025년 10월 10일
- 제 출 자: 박주용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2. 제안사유

-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, 관련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-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달성군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,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.
- 독도와 관련하여서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05년 「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정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독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.
- 2021년 ‘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’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, ①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, ②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, ③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, ④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, 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, 총 7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본 제정조례안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- 또한 교육부는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독도교육 활성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. 관내 대구의 경우에도 “대구광역시교육청”에서 「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」를 2020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.
- 다만, 교육청의 조례의 대상은 초중등 교육기관에 한정되어 있는점을 들어,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

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.

- 2025년 10월 기준 독도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는 전국 20개 정도이며, 제정한 조례의 목적은 주로 ① 교육, ② 독도 거주 민간인, ③ 기타(독도의 날, 시설, 출향해녀 예우 등)로 나타납니다.

- 이에, 타 지자체 조례와 달리 본 조례안은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홍보사업까지 포괄함으로써 독도 가치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점, 독도의 날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교육 및 홍보 기획을 통해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,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716호
- 제출 일: 2025년 10월 10일
- 제출 자: 양은숙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2. 제안사유

- 「도서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공립작은도서관의 대출 권수·회원제 등 운영기준을 달성군립도서관 운영기준과 통일함으로써 달성군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일관된 도서관 정책과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성군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·용어 현행화
- 공립작은도서관 운영기준을 달성군립도서관 운영기준과 정합화
(안 제6조·제19조·제22조)
-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자율성 명확화(안 제22조)

4. 관계법령

- 「도서관법」, 같은법 시행령, 「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 정비와 등록·지원 절차의 구체화를 통해 작은도서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,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.

- 제10조, 제12조, 제19조에서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작은도서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 및 운영을 하게 변경하였으며, 준용 조항 등을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.

- 종합적인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사립도서관 등록 의무 강화, 지원기준, 운영인력, 회원제 규정 등의 완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717호
- 제출일: 2025년 10월 10일
- 제출자: 양은숙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6일

2. 제안사유
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- 시행계획 및 기반조성, 지원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7조)

4. 관계법령
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.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정책은 2023년 10월 제정된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광역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- 특히 대구광역시는 상위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「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.
- 보건복지부는 2023년 “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”을 수립하여 ① 공익활동형, ② 사회서비스형, ③ 민간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대구 관내 자치구에서는 남구, 북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.
- 향후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 시, 중앙의 기본계획 및 광역의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. 종합적으로 볼 때 상위법령의 정합성 확보 및 달성군의 특성에 맞게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.